등록번호	복지지원과-4563
등록일자	2015.3.6.
결재일자	2015.3.6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통합조사팀장	복지지원과장	복지환경국장	
이혜숙	정채수	조충현	03/06 유용렬	
협조				

2015년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확인조사 계획

복지환경국

복지지원과

2015.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확인조사 계획

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소득 및 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적자료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·조사·반영함으로써 복지급여 제도의 정확한 집행과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

Ⅰ 추진개요

□ 추진일정

○ 조사기간 : 2015. 3. 2.(월) ~ 5. 29.(금)

- 자료반영 : 2015.3.2 ~ 5.29.

※사전조사 : 2015.2.2 ~ 2.26.(기초수급자)

- 소명반영 : 2015.3.2. ~ 5.29.

○ 조사대상 : 12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

▸ 12개사업:①기초생활보장 ②기초연금 ③장애인연금 ④차상위 장애수당 ⑤차상위자활 ⑥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⑦한부모가족지원 ⑧청소년특별지원 ⑨우선돌봄차상위 ⑩,⑪타법의료급여 (⑩북한이탈주민 ⑪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), ⑫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

※ ⑨ 10회차(2015년 상반기)부터 신규로 편입
⑫ '13년부터 연1회 수행 (매년 상반기 확인조사에서 수행)

○ 확인조사 건수 : 887건 (12개복지사업 수급자)

- 사전정비건수 : 663건 (기초수급자)

- 확인조사 대상자

(단위: 건)

서비스명		통보건수	비고
계		887	
국민기초		479	
기초연금		216	
장애인연금		6	
차상위장애인		29	
차상위자활		13	
차상위본인부담경감		49	
한부모가족지원		35	
청소년특별지원		0	
우선돌봄차상위		58	
타법의료급여	북한이탈주민	2	
	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	0	
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사업		0	

○ 조사항목 : 건강보험 보수월액,재산세 관련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 결과

※금융재산조회

사 업	조사 대상 범위	비고
기초생활보장	- 전 수급자(부양의무자포함) - 부양의무자 중 금융재산동의서가 징구된 자	
기초연금	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	
한부모가족	- 정부지원 대상 한부모가구의 연령초과 자녀를 제외한 전 가구원	
장애인연금	-수급자(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)의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-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	
차상위장애수당	-전 수급자	
타법의료급여(북한이탈주민,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)	-전 수급자 * 단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보유자에 한함 * 동의서의 수집대상 보장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과거 동의서가 존재할 경우 조사대상 포함	
교육비지원	-'14년 교육비 지원자 및 지원자 가구 * 단, 조사(명단 추출) 당시 저소득층 자격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법정차상위대상자)을 보유하고 있거나, 신청내역이 없는 지원자(학교장 추천 지원)는 제외	

□ 조사개요 및 방법

○ 사전조사 : 신규 재산·소득자료 확인 및 반영여부 결정

- 사전정비 종료전에 통조표에 변동사항(소득·재산) 반영여부 결정
- 급여 변동자에 대해 사전안내 : 서면 및 유선 통지

○ 자료반영 및 급여확정 : 사전조사 반영 및 3월 급여 확정

- 반영원칙 : 과거 공적자료삭제, 신규 조회된 공적자료 반영
  - 중복된 자료 확인 제외, 신뢰성 높은 신규 자료로 반영
- 일용근로소득 : 국세청 자료 월별, 사업장별 금액 반영
  - 사업장별로 확인서 징구, 월별 소득액 시스템 입력(국세청에 일괄통보)
  - 금액반영 : 두 분기 일용근로소득 합산 후 6개월로 월평균 소득금액 반영
  - 사실확인서 징구 : 소득내용 다름을 주장
  - 중점관리대상자 : 14년 하반기 확인조사 소명반영자 중 이번 분기에 월 평균 20만원이상 소득이 있다고 조회된 자
    ※ 사업장 급여 계좌 확인 및 통장징구 조사
    ※ 현금수령자 : 지출실태조사

○ 소명반영 : 급여변동자에 소명기간 부여

- 소명기간동안 현금급여 중지, 현물급여 지급
- 취약계층(노인, 장애인 등) 소명과정에 많은 시간 소요됨을 고려

○ 수급자격 및 급여내역 확정

- 보장중지자 : 3월급여 지급, **4월급여 정지**(미처리자도 해당)
- 급여감소자 : 3월부터 반영(사전 안내하여 민원 최소화)
- 처리 기한 : 5.29일자로 전자결재 완료

○ 사후관리

- 기타 복지서비스 또는 민간서비스 연계 지원
-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(부양의무자 포함)
- 중구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

II 행정사항

○ 사업부서 : 보장중지, 급여변경 결정 및 결정사항 통보, 보고사항 취합 및 보고(5. 29일자로 전자결재 완료)

○ 동주민센터 : 1차 민원대응, 필요자료 징구, 대민 접촉업무 협조, 소득재산 관련 변동사항은 통합조사팀에 전달하여 처리. 끝.